

성북솔샘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본 사항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일상생활(ADL) 케어와 간호서비스 제공, 의미있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2) 본 센터와의 계약 시에는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① 대상자관리 및 서비스지원, 변경기록지
 - ② 입소(이용)자의 권리
 - ③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④ 투약 의뢰서 및 투약 동의서
 - ⑤ 기타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서류

2. 계약

- 1) 이용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본인이 치매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2)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②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 ③ 기타 센터에서 필요한 해당서류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치매 진단서(해당자) 1부,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료)만 해당) 1부, 의료보험증(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료)만 해당) 1부

3. 계약기간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 아래의 퇴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 기간은 변경 될 수 있다.

-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등
- 기관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 : 전염성 질환,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 행위 등 타 이용 대상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③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중증 우울증, 기타 정신적 성격적 문제로 타 이용자와의 공동생활에 막대한 해를 끼칠 때
-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제4호, 제5호, 제7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3)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이용대상자의 타 지역 이주로 인한 경우, 센터는 보호자에게 이용대상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요청 시 이주 지역의 시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5. 계약의 정지

이용자가 14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6. 월 이용료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다음의 각 호에 절차에 따라 납부한다.

-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498,300원	1,331,800원	1,276,300원	1,173,200원	1,007,200원	566,60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 (1회당, 이용시간별)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2.01.01.) (원)

분류		2022년 수가	2022년 본인부담금
3시간 미만	1등급	29,560원	4,434원
	2등급	27,370원	4,106원
	3등급	25,260원	3,789원
	4등급	24,110원	3,617원
	5등급	22,960원	3,444원
	인지지원등급	22,960원	3,444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	36,950원	5,543원
	2등급	34,210원	5,132원
	3등급	31,580원	4,737원
	4등급	30,140원	4,521원
	5등급	28,700원	4,305원
	인지지원등급	28,700원	4,305원

분류		2022년 수가	2022년 본인부담금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	49,530원	7,430원
	2등급	45,880원	6,882원
	3등급	42,350원	6,353원
	4등급	40,910원	6,137원
	5등급	39,450원	5,918원
	인지지원등급	39,450원	5,918원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61,600원	9,240원
	2등급	57,070원	8,561원
	3등급	52,690원	7,904원
	4등급	51,250원	7,688원
	5등급	49,790원	7,469원
	인지지원등급	49,790원	7,469원
10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2021년까지는 12시간 미만)	1등급	67,870원	10,181원
	2등급	62,870원	9,431원
	3등급	58,080원	8,712원
	4등급	56,620원	8,493원
	5등급	55,180원	8,277원
	인지지원등급	49,790원	7,469원
13시간 초과 (2021년까지는 12시간 이상)	1등급	72,780원	10,917원
	2등급	67,420원	10,113원
	3등급	62,280원	9,342원
	4등급	60,840원	9,126원
	5등급	59,400원	8,910원
	인지지원등급	49,790원	7,469원

※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시 월한도액 120%까지 서비스 이용가능

※ 18시 이후에는 20% / 공휴일은 30%의 가산 적용 됨.

※ 시설 미이용시 월 최대 5일 범위 안에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가 청구됨

- 4)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식재료비 : 일 3,500원 - 간식비 : 일 1,500원
- 5) 등급외자의 이용료는 서울시 데이케어센터 운영 규정에 따라 1일 23,000원(주간 식비 및 간식비 포함), 월 460,000원으로 하며, 주말(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5등급 수가 산정 기준에 따른다.
- 6)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
- 7) 이용료는 매월 10일 전까지 후납 하도록 한다.
- 8) 일일 이용자의 경우 이용날짜를 합산하여, 이용 익월 10일까지 납부한다.
- 9) 이용료의 납부는 계좌 입금으로 한다.

7. 이용대상자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이용 기준에 의거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 1)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1 ~ 인지지원등급 및 등급 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본 기관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노인 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이용의뢰를 받은 노인 포함)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8. 계약자, 당사자, 신원인수인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신원인수인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표준요양급여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2) 이용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의거)
 -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④ 신원인수인의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최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
-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② 시설에서 실시하는 가족간담회, 가족행사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음.
- ③ 수급자가 안전한 활동여건 속에서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